

4~5》 흡연권 VS 혐연권



8》 경희극회 70회 정기공연



9월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설명회(면담) 및 특강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기간 : 2016. 09. 19.(월)~2016. 09. 23.(금)



2016 세계평화주간

19일 청운관 앞에서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필 미래문명원장, 후마니타스칼리지 김희찬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양윤주 기자)

취업률 51.2%, 주요 대학 대비 저조 식품영양 26.5→62.5%로 도약

2016 우리학교 취업률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8월말 교육부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취업률과 진학률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우리학교 졸업생 5,439명 중 2,330명이 취업해 51.2%의 취업률을, 560명이 진학해 10.3% 진학률을 기록했다.

우리학교의 취업률은 2014년 50.6%, 2015년 50.9%로 지난 3년 간 0.3%p씩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주요 경쟁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다. 서강대(56.8%), 중앙대(58%), 연세대(59.4%), 서울대(60%), 한양대(64.5%), 고려대(66.6%), 성균관대(69.3%)에 비해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한의과대학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학대학(68.3%), 간호대학대학(67.4%), 호텔관광대학(64.2%), 공과대학(61.5%)이 뒤를 이었다. 취업률이 낮은 단과대학으로는 음악대학이 7.1%로 가장 낮았으며 미술대학(15.4%), 예술·디자인대학(37.5%), 체육대학(39.2%) 순이었다. 예체능계열 대학들의 약세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육대학은 전년대

비 44.1%에서 39.2%로 5%p 가까이 크게 하락했다. 반대로 생명과학대학은 전년대비 31.3%에서 43.1%로 11%p 이상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학과별로 약학과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학과(82.8%), 간호학과(82.6%), 기계공학과(73.9%), 화학공학과(73.2%) 순이었다. 취업률이 낮았던 학과로는 성약과(5%), 기약과(8.2%), PostModern 음악학과(14.7%), 미술학부(15.4%)였으며 골프산업학과가 0%로 가장 낮았다.

학과별로 눈에 띠는 차이를 보인 학과들도 있었다. 높은 취업률을 상승을 보인 학과는 약과학과가 0%에서 66.7%로 66.7% 상승했으며, 식품영양학과 26.5%→62.5%

로 36%p, 수학과 35%→64.3%로 29.3%p, 아동가족학과 36.4%→61.9%로 25.5%p, 원예생명공학과 25%→48%로 23%p 증가해 생활 과학대학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취업률이 떨어진 학과로는 골프산업학과가 100%→0%로 크게 하락했으며,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87.2%에서 53.5%로 33.7%p, 한국어학과가 87.5%→59.1%로 28.4%p, 러시아어학과 65.5%→38.5%로 27.1%p, 스포츠의학과가 57.8%→31.6%로 26.2%p 감소하여 체육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쳤다.

▶3면으로 이어짐

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혐연권과 흡연권이 부딪치면, 생명권과 연결된 혐연권이 보다 상위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5면으로 이어짐

흡연권과 혐연권, 권리와 편리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기획 - 학내 흡연 실태 분석

최병현 기자 chbhb1027@khu.ac.kr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강화됐다. 이후 정부는 2012년 흡연구역 폐지, 2015년 담배값 인상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이르렀고, 2016년 5월 1일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

면서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바야흐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흡연자는 늘어난 금연구역만큼 충분한 흡연 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흡연을 둘러싼 문제는 이 두 개의 권리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충하면 어떠한 권리를 우선해야 할까? 먼저

현법재판소는 이 둘 모두가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이라 인정한 바 있다.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조문의 위헌 확인을 청구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교육 위기의 본질

이효인(연극영화학과) 교수 ▶7면

